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석 요구 대상 확대 및 불출석에 대한 벌칙 신설〉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33호)

2024. 8.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차관급 이상 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 포함	3
2. 국무위원등 불출석 처벌 및 고발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현희 · 민병덕 · 박지원 · 복기왕 · 정준호 · 김동아
맹성규 · 윤종오 · 고민정 · 김영배 · 주철현 · 이학영
박희승 · 백승아 · 양부남 · 이광희 · 박용갑 · 손명수
한준호 · 임미애 · 김 윤 · 신정훈 · 문금주 · 서미화
이재강 · 서영석 · 강유정 · 이병진 · 이상식 · 강선우
황운하 · 박해철 · 이정현 · 김영환 · 박선원 · 윤후덕
이용우 · 황명선 · 송재봉 · 최민희 · 황정아 · 이수진
양문석 · 신영대 · 문대림 · 박홍배 · 차규근 · 한창민
노종면 · 김 현 의원(50인)

2. 제 안 일 : 2024. 6. 19.

3. 회 부 일 : 2024. 6. 20.

※ 의안번호 : 63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차관급 이상 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 포함(안 제69조·제115조·제120조 및 제121조)

개정안은 ① 본회의나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등”이라 함) 외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② 국무위원등과 마찬가지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③ 이에 맞추어 위원회 회의록 및 본회의 회의록의 기재사항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성명을 포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석한 <u>국무위원·정부위원</u>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5. ----- <u>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u> -----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5조(회의록) ① (생략)	제115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출석한 <u>국무위원과 정부위원</u> 의 성명	8. ----- <u>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u> 의-----
9. ~ 19. (생략)	9. ~ 1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 -----. ②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 ③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④·⑤ (현행과 같음)

헌법 제62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0조제1항은 국무위원등의 국회 출석·발언권과 발언 시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2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무위원등에 대한 출석 요구, 답변 의무 및 대리·출석 답변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음.¹⁾

이와 같은 국무위원등의 국회 출석·발언권과 국무위원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답변 의무 등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여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헌법,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정부조직 관련 법령 등에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²⁾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³⁾ ① 중앙행정

1)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정부위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문에 응답하는 고위공무원을 말함(법제처, 「정부조직법 주해」, 2006, p.114).

3) 2024년 8월 현재 국무위원에는 19명의 행정각부 장관이 있으며, 정부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정부위원	근거규정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정부조직법」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7
금융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및 사무처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개인정보 보호법」 §7의2

기관, ②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③ 개별법에 국회출석·발언권 및 출석 요구가 규정된 기관의 장 등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법」상 출석 요구 근거가 불분명한 기관이 존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앙행정기관⁴⁾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은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않고, ②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⁵⁾의 장인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국가안보실장(장관급)·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은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개별법에 국회출석·발언권 및 출석 요구가 규정⁶⁾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 및 고위공직자범죄

4) 「국가재정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부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참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5)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수사처장(차관급)은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않음.

현재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법률안·예산안·결산 등 안건심사나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참모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등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 등이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법」상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출석 요구 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의 입법적 공백 해소와 법적 정합성 제고⁷⁾를 도모하고 실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석·답변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회의 출석 요구 제도가 가지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됨.⁸⁾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회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제5

7) 개별법에서 정부위원을 추가하거나 국회 출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출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8)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발언 허가 및 출석 시 본회의·위원회 회의록 게재는 해당 공무원의 출석 요구 확대와 연계·부수되는 사안임.

항⁹⁾에서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해당 조항들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감사원장·감사위원(6명) 및 감사원사무총장도 포함되므로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21조제5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무위원등의 임면 시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9조¹⁰⁾도 개정안에 맞추어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9) 「국회법」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국회법」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2. 국무위원등 불출석 처벌 및 고발 (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개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등¹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는 동시에, 해당 죄(출석 요구 등의 불응죄)의 고발 절차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1조의2(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등의 불응죄) 제1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21조의3(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제121조의2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1)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그 밖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임.

헌법 제62조제2항¹²⁾ 및 「국회법」 제121조제3항¹³⁾에서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표-3]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국회법」 제121조)

구 분	방 법	대 상 자	효 과
본회의	•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발의 → <u>본회의 의결</u>	• <u>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u> -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 출석 • 답변 가능 (국무총리→국무위원, 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및 답변 의무
위원회	• <u>위원회 의결</u>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필요	

이에 개정안은 국무위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을 마련함으로써, 국무위원등의 출석 의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34조¹⁴⁾와 별개로 「국회법」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특별규정을 두어, 국회의 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내부의 의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12)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3)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1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서는 국회의 고발이 있을 때 수사가 진행되도록 규율하려는 취지로 보임.¹⁵⁾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국무위원등의 출석·답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등의 자율권 인정 측면¹⁶⁾과 벌칙에 따른 형사책임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증인 불출석 관련 법정형¹⁷⁾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

15)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참고로, 개정안의 고발 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6)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법적 출석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음(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576).

17) 참고로, 개정안은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법정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나, 국무위원등과 증인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법정형이 적정한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